

국립생태원 공고 제2019 - 17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국립생태원장

2019년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개정고시(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도두(336062)' 등 191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1	336062	도두	97	366102	대야
2	336063	한림	98	366111	보령
3	336064	귀일	99	366112	라원
4	336071	제주	100	366113	대천
5	336072	함덕	101	366114	외산
6	336073	오라	102	366121	청양
7	336074	와산	103	366123	온산
8	336081	김녕	104	366124	부여
9	336082	우도	105	366144	연도
10	336083	송당	106	366151	웅천
11	336084	신양	107	366152	판교
12	336101	고산	108	366153	개야
13	336102	저지	109	366154	서천
14	336103	무릉	110	366161	홍산
15	336104	모슬포	111	366162	석성
16	336111	회수	112	367011	평택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17	336112	한라산	113	367012	성환
18	336113	강정	114	367021	서운
19	336114	서귀	115	367022	만승
20	336121	위미	116	367052	전의
21	336122	표선	117	367053	마곡
22	345122	접우	118	367054	의당
23	345124	눌옥	119	367101	금남
24	346084	관산	120	367103	유성
25	346132	독거	121	367104	대전
26	346161	대모	122	367131	논산
27	346162	청산	123	367132	연산
28	347013	보성	124	367141	평촌
29	347014	조성	125	367142	마전
30	347023	벌교	126	368061	산북
31	347024	원창	127	368062	예천
32	347031	광양	128	368064	풍천
33	347032	금리	129	368073	매곡
34	347033	신평	130	368074	안동
35	347034	쌍봉	131	368102	안계
36	347041	대도	132	368111	하령
37	347042	설천	133	368112	단촌
38	347043	서상	134	368114	의성
39	347044	남해	135	369023	갈면
40	347051	울포	136	370122	울릉
41	347052	서당	137	375162	굴업
42	347061	과역	138	375164	백아
43	347062	백일	139	376064	신도
44	347063	고흥	140	376073	영종
45	347071	화양	141	376074	계산
46	347072	여수	142	376083	공항
47	347074	개도	143	376084	서울
48	347081	돌산	144	376101	용유
49	347082	노도	145	376102	삼목
50	347083	우학	146	376104	무의
51	347093	평일	147	376111	월미
52	347121	소리	148	376112	인천
53	348011	삼천포	149	376113	팔미
54	348012	학림	150	376114	오이
55	348013	창선	151	376121	소사
56	348014	사랑	152	376122	안양
57	348021	고성	153	376123	고잔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58	348022	신룡	154	376124	군포
59	348023	추도	155	376143	376143
60	348024	통영	156	376151	대부
61	348031	가조	157	376152	사강
62	348032	고현	158	376154	궁평
63	348033	거제	159	376161	남양
64	348034	장승포	160	376162	발안
65	348041	348041	161	376163	조암
66	348062	비진	162	376164	숙성
67	348071	매물	163	377031	목동
68	348072	갈곶	164	377042	북산
69	356023	말도	165	377053	성동
70	356024	신시	166	377063	양수
71	356031	오식	167	377064	국수
72	357074	함양	168	377091	둔전
73	357124	단성	169	377092	성남
74	357154	진상	170	377093	수원
75	357162	대평	171	377094	능평
76	357163	하동	172	377101	광주
77	357164	성내	173	377102	양평
78	358051	마상	174	377103	노곡
79	358102	남지	175	377104	이천
80	358104	함안	176	377113	능서
81	358114	진영	177	377131	오산
82	358131	진주	178	377132	용인
83	358132	삼곡	179	377133	서정
84	358134	두문	180	377134	동항
85	358141	반성	181	377141	좌항
86	358143	구만	182	377142	단월
87	358144	진동	183	377143	안성
88	358153	남포	184	377144	죽산
89	358163	동선	185	377151	가남
90	366041	신평	186	377153	생극
91	366042	안중	187	377154	장호원
92	366054	거아	188	387144	도평
93	366073	갈산	189	387163	간동
94	366074	홍성	190	377062	청평
95	366083	대흥	191	377071	모곡
96	366084	유구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에 45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참조 : 생태조사연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붙임 양식)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지역 위치, 조정요구내용, 이의제기 사유, 연락처, 관련 서류 등
-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동의서 등

나. 등급 지정 오류나 자연적 또는 적법한 토지피복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5부) 등

- 이의신청지역에 대해 당해 또는 전년도의 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등)의 조사결과서(1계절) 및 소견서 첨부 등

※ 세부내용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등급의 수정·보완 신청) 참조

※ 문의 :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생태자연도연구팀(041-950-5671~5673, 5676, 5677, 5679, 5680, 5682)